

(전기)오토바이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요!

일반 자전거, KC 인증받은 전기자전거 ·
전동킥보드 · 전동이륜평행차를 제외한
모든 '차'는 자전거도로 통행불가!

* 전기자전거 KC 인증번호 확인
(B403/영문자/0000-00000)
ex) B403R5166-25015

▶ 제품안전정보센터 "인증정보 검색"



자전거 안전운행 가이드



안드로이드

IOS

자전거 행복나눔 앱



안드로이드

IOS

안전신문고 앱



안드로이드

IOS

※ 불법제품신고
1670-4920 (제품안전정보센터)



모두가 행복한 자전거도로!

자전거 안전운행 가이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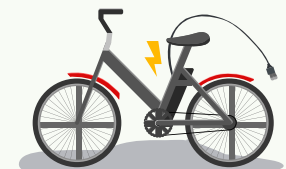
자전거도로 '통행 가능' 교통수단은,

[동력인 경우]
속도 25km/h 미만!
차체중량 30kg 미만!

일반 자전거(무동력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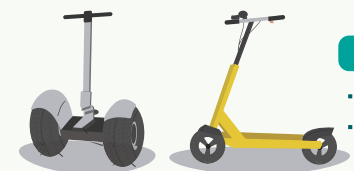
전기자전거



KC 인증받은

- 파스
- 스로틀
- 파스/스로틀 겸용

개인형 이동장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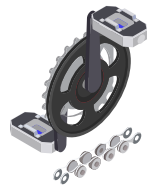
KC 인증받은

- 전동이륜평행차
- 전동킥보드

일반 자전거 외 **자전거도로** 통행 가능 교통수단 요건

(전기자전거 · 전동킥보드 · 전동이륜평행차)

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려면
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모두 갖추주세요!



‘페달주행’ 가능한 전기자전거

페달주행이 가능한 PAS 방식,
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

안전확인신고 필수!

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
안전확인(KC인증)신고가 된 것



25km/h 미만

25km/h 이상 시에는
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함

30kg 미만

배터리 등 부착된 장치의 무게 포함
전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함



자전거 운행 시 안전수칙

자전거 운행 시 안전을 위해
운행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세요!



브레이크 장착

앞·뒷바퀴 각각을 제동하는
브레이크가 장착되어
있어야 함

안전모 착용

자전거 운행 시
안전모를 반드시 착용

안전장치 장착

야간운행의 안전을 위해
전조등, 미등, 반사장치 등을
반드시 장착

안전속도 준수

자전거 운전자 및
보행자 보호를 위해
시속20km 이하 주행 권고

운전면허 필요

- (대상) 스로틀 전기자전거 (파스/스로틀 겸용 포함),
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
- (면허)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

자전거 등 관련 법규

관련 법규를 지키는 작은 실천,
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의 시작입니다.

자전거도로에서의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 통행 금지

- 자전거 전용차로 (벌칙금 3만원 or 과태료 4만원)
- 자전거 겸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
(벌칙금 4만원 or 과태료 5만원)
※통행금지 표지가 있는 경우

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차차 금지

- (승합차) 벌칙금 or 과태료 5만원
- (승용차) 벌칙금 or 과태료 4만원
- (이륜차) 벌칙금 3만원
- (자전거등) 벌칙금 2만원

전기자전거 불법개조 금지

- (개조한 자) 6개월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
- (자전거도로 운행한 자) 과태료 4만원

자전거도로 통행위반 시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

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
위반 사실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
적극 활용하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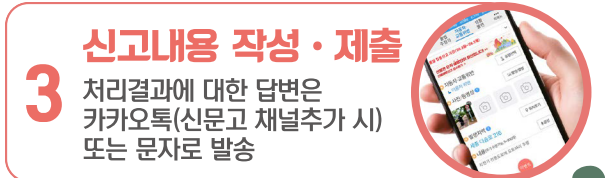
1 안전신문고 앱 설치

구글 play 스토어 or
앱스토어에서
안전신문고 앱 검색 후 설치



자세한 신고방법,
신고분야·요건 등은
**안전신문고 앱 또는
홈페이지** 내 안내사항 확인

2



3 신고내용 작성 · 제출

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은
카카오톡(신문고 채널추가 시)
또는 문자로 발송

※ 신고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신고서 제출 시 반려될 수 있음

